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1066-14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부 예규 제91호, 2024. 8. 1. 시행]

2024. 8.



교 육 부



목 차



제1편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 1 부 일반 기준

1. 목적	5
2. 기본방향	5
3. 일반기준	6

제 2 부 사업별 기준

1. 지방보조금	17
2. 민간위탁사업비	24
3. 교육정보화사업비	28
4. 시설사업비	31
5. 예비비	34

제 3 부 성질별 기준

1. 인건비(110목)	39
2. 운영비(210목)	42
3. 여비(220목)	57
4. 업무추진비(230목)	60
5. 복리후생비(240목)	64
6. 직무수행경비(250목)	66
7. 연구개발비(260목)	68
8. 경상교육지원사업비(280목)	69
9. 보전금(310목)	70
10. 민간이전(320목)	71
11. 자치단체등 이전(330목)	75
12. 해외이전(340목)	77

2. 민간위탁사업비

1 개요

1) 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17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시도교육청 민간위탁 조례 또는 교육규칙

2) 개념

-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유사개념]

구분	민간위탁사업비	위탁사업비(예: 공공기관 시도분담금사업비)
위탁기관	민간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공공기관(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
편성목	민간위탁금(320-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30-05)

2 기본지침

1) 위탁의 적정성 검토

- 위탁사업의 경우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위탁을 실시한다.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편성하여서는 안된다.

- 사업부서는 사무의 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무 또는 위탁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판단기준]

- 교육감 소관 사무에 해당되어야 함
-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무관하여야 함
- 공익적 목적을 가진 행정서비스
-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속적인 사무
- 서비스 공급과정의 전체적인 사무
- 권한 행사의 법률적 효과가 행정/공공 기관이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원리가 적용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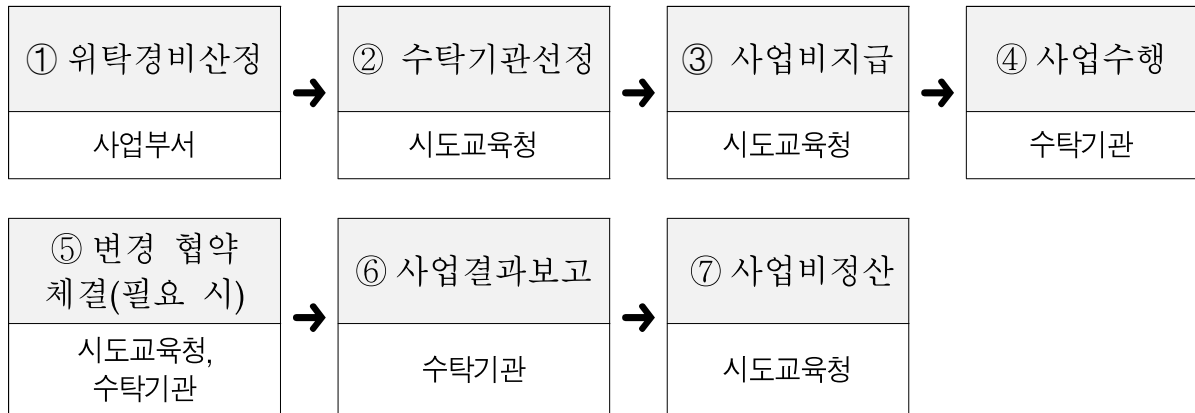
2) 위탁계약 이행 장치 마련

- 위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성과지표 설정 등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의 성실한 사업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계약 시 손해배상 등 제제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3) 위탁계약기간 결정 및 성과평가

- 위탁계약기간은 대상사업의 특성이나 업무내용, 관련 법률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이 결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성과평가결과는 위탁기관에서 분석하여 향후 계약 시 활용하여야 한다.

4) 흐름도



3 세부지침

1) 위탁경비의 산정

- 개별 법령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 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업무효율성 향상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 기관에 귀속된다.

2) 수탁기관의 선정

- 교육감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단체 등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다.
 -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 기관 또는 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단, 민간위탁 조례 등에서 규정한 수탁기관선정심(심사·관리)위원회 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3 용역사업비(210-13)

【공통기준】

- 계약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업체)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 위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성과지표 설정 등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소요 비용을 산정하고,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 사업의 경우 관련 예상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 산출하고, 예상 수입액이 소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금고에 납부토록 조치한다.
- 주요 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외부위탁 계약 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전산개발·운영의 경우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위탁계약 종료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등으로 수탁기관의 성과평가를 하며, 성과평가 결과는 향후 계약 시 활용한다.
- 성과평가 시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 등 노사 관계 선진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관리용역비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 집행한다.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리용역비]

- 시설장비유지비(210-09세목):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
- 관리용역비(210-13세목):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일반용역비와 민간위탁금, 공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 일반용역비(210-13세목):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대행하는 비용
- 민간위탁금(320-02세목):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비용
-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330-05, 330-06세목): 시·도교육청이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경비(예: 시도분담금)

- 건축물 일반청소, 보안 경비,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고시(중소벤처기업부)

2) 일반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경우에 집행한다.

※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연구, 장비·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14 민자사업운영비(210-14)

-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약정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한다.

15 기타일반수용비(210-15)

1) 부서운영경비

- 직제에 반영된 실·과·담당관 등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 운영경비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부서운영경비에서 경조사 관련 축·조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실무 편람(2012년, 예산 및 회계운영분야 지적사항)

- 부서운영경비의 기준액 및 경비성격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 【별표1】 4. 부서운영경비를 따른다.

-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해당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하고, 발생한 이자는「기타예금이자(24101)」로 세입 조치한다.

※ 출납폐쇄기간 이후 반납하는 보조금 및 예금이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별표2】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재원구분에 따라 ‘그외수입(27203)’ 또는 ‘보조금등반납금수입(27205)’으로 세입조치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 정산 시 증빙서류

- 보조금 정산 시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실적보고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2 민간위탁금(320-02)

-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령,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회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한 경우로서 예상 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사업종료 후 초과수입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조치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에 정산하여 귀속한다.

[타 개념과의 구분]

구분	민간위탁사업	보조금사업	용역사업
형태	위탁받은 사무를 수탁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책임으로 행정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형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동등한 상황에서 직·간접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	민간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고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
분야	• 조사·검사 등 단순 사실행위 또는 특수전문지식(기술) 공급 예)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체 과정이나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예)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문해교육지원, 체육·예술교육 지원 등	• 주로 단순 지원 사무 (지속성x) 예) 공공서비스 공급 과정의 부수적인 사무(일부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3 공무원 법정부담금(320-03),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320-05), 공무원 법정부담금(320-12), 계약직교원 법정부담금(320-13)

-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개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4 보험료부담금(320-06)

- 민간이 부담하는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보험료 지원비)을 집행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비를 집행한다.

5 이차보전금(320-07)

- 특정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를 집행한다.
- 담당부서는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된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규 대출 확대 등 해당연도 예산상의 대출평균잔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민간대행사업비(320-08)

- 교육청이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경우 제반비용을 집행한다.(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 민간위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토록 하나, 민간대행의 경우에는 사무의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에 귀속된다.
-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민간위탁금(320-02세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은 '대행', '수탁'은 '수행'으로 간주한다.

7 기타민간융자금(320-09)

- 시도교육청이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부문에 대하여 1년 미만 혹은 1년 이상 빌려주는 자금을 집행한다.